

김포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323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3. 5. 24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5월 24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도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환경부에서 요청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 개선안 반영
- 운영상 미비점 개선 및 원인자부담금과 관련된 세부사항 보완

3. 주요내용

- 가. 배수설비 유지·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3조)
- 나. 개별건축물 및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정비(안 제19조 및 제21조)
- 다.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제명 및 조항 정비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환경부의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원인자 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던 ‘폐수배출’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및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,
- 향후 인·허가를 받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, 모호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 구체화 및 단위단가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본 개정안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되며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